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29990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지예

피고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퍼م

담당변호사 정철승

변론 종결2023. 8. 10.

판결 선고2023. 9.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6.부터 2022.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매도한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원고들과 일괄하여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2020. 12. 3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D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215,965주를 주당 28,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90,965주, E는 62,500주, 원고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62,500주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매도인들, F,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매도인들로부터 인수하는 잔여 주식수 및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 A	81,869주	2,292,318,000
E	56,250주	1,575,000,000
원고 B	56,250주	1,575,000,000
합계	194,369주	5,442,318,000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 B에게만 매수대금을 지급한 채 원고 A과 E에게 대금지급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과 E는 같은 날 피고와 잔여 매매대상 주식의 매매방법 및 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G	81,869	2,292,332	1,869	52,332	80,000	2,240,000
E	56,250	1,575,000	25,000	700,000	31,250	875,000

G	81,869	2,292,332	1,869	52,332	80,000	2,240,000
합계	138,119	3,867,332	26,869	752,332	111,250	3,115,000

라. 매도인들과 피고는 2021. 12. 15. E의 매도인 지위를 원고 B가 이전받는 한편, 피고의 대금지급기한을 2022. 1. 15.까지 재연장해 주되, 2021. 12. 15.부터 잔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변경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채권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후 명시적 일부청구로써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	2,292,332,000원	12,058,294원	2,304,390,294원
원고 B	1,575,000,000원	8,284,931원	1,583,284,931원
합계	3,867,332,000원	20,343,225원	3,887,675,225원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6.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원

판사정재우

판사이덕균

1) 2021. 12. 15.부터 대금지급기한인 2022. 1. 15.까지 연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2) 피고의 2023. 6. 1. 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 한편, 피고는 2023. 8. 10.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변경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유한회사 K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유한회사 K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에 포함시켰다가 취하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을 제1호증)에 첨부된 확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다.